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12월 25일 08시 19분



# 목차

목차	2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	3
지원대상	3
지원 내용	3
지원 검사 항목	3
검진기관	3
신청방법 및 절차	3
신청 및 청구서류	4
청구기한	5
주의사항	5
문의전화	5

출산지원금 지원	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한방난임치료 지원	신혼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	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	<b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</b>	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
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		

## 지원대상

-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  - ※ 단,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(15~49세, WHO 기준)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
  -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(또는 예정)이며,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 지원 가능

## 지원 내용

-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 중 본인부담금
- 1인 1회(여성 13만원/ 남성 5만원 이내) 지원

## 지원 검사 항목
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- 남성: 정액검사
  - ※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
  - ※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, 부인과 질병(난임 등) 의사 소견으로 급여(건강보험 적용)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

## 검진기관

- 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

### 검사비 지원 신청

- 방문 신청(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)
- 온라인신청(e보건소)

검사 희망자



### 검사의뢰서 발급

-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

여수시보건소



### 검사 및 결과상담

-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
  - >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
  - >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

사업 참여 의료기관



### 검사비 청구

- 방문 청구(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)
- 온라인청구 (e보건소)
  - >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
수검자



### 검사비 지급









-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
  - >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
여수시보건소

## 신청 및 청구서류

구분	제출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</li> </ul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 신청서 hwp다운로드                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 신청서 pdf다운로드                 </div> </div>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신청	영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1부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wp다운로드   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pdf다운로드</li> <li>신청자 주민등록등본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hwp다운로드   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pdf다운로드</li> </ul>
	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, 추가 서류 없음</li> <li>부부(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)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, 아래 서류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률혼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</li> <li>사실혼: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,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사실혼확인보증서 hwp다운로드     사실혼확인보증서 pdf다운로드</li> </ul> </li> <li>예비부부: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</li> <li>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,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</li> </ul>
청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 검사비청구서 hwp다운로드     검사비청구서 pdf다운로드</li> <li>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</li> <li>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</li> </ul>

## 청구기한

-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

## 주의사항

- 사전 신청 필수(소급 지원 불가)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
-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

## 문의전화
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/ 061-659-4087

# Yeosu Web Contents

